



Zoom-in Trade

- ▶ COVER STORY:
CARE PLAN 2011 1
- ▶ FTA News:
한-EU FTA..
준비되었나요? 2
- ▶ VOICES FROM THE FIELDS:
보세구역외 장치(타소장치)
허가제도 3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4
-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5
- ▶ WHERE IS GRACE CHANG?: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용기를..... 7
- ▶ ABOUT WRITERS 7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CARE PLAN 2011 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CARE PLAN 은 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MENT 의 약자로서 관세청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지원대책입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CARE PLAN 2011 어떠한 정책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RE PLAN 2011

CARE PLAN 은 2008년 4월 처음 도입한 이래 4차에 걸쳐 매년 연장 시행해온 제도로서 그간 총 855개 업체에 약 5.6조의 납기연장으로 금융비용을 약 789억원 절감을 지원하는 등 업체의 자금위기극복에 기여하여 왔다. 또 체납자 회생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적 자금부족에 처한 체납자 113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일실될수 있었던 131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효과도 거두었으며, 과다 납부한 업체의 세금 123억원을 세관장 직권으로 찾아주어 관세전담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에 일조 하였다.

2011년 올해에도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관세행정상 각종 중소기업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한다.

그 중요지원내용은 납기연장, 수출환급지원 체납자 신용회복지원, FTA.AEO 제도 지원 등이다.

그럼 그 각각의 지원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중소기업 납기 연장 지원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제조업체에 한해 통관시 납부할 세액을 3개월간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부여한다. 납기연장 최대 세액 규모는 해당 업체가 지난해

납부한 총 세액의 30%까지 이다.

이와 함께 기업심사 등의 결과로 인해 3천만원 이상 세액추징이 예정됨에 따라 세액을 일괄 납부 추정할 경우 도산의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이 연장 또는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 수출 환급 등 수출 지원

자동환급대상업체가 수출신고 수리와 동시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 환급대상 품목에 두발용 제품류 등 56개 품목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총 3천 973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신규품목에 대한 고시횟수를 년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 체납자 신용 회복

세금 체납업체가 체납액의 5%를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용회복과 체납처분을 유예토록 조치하며, 경영의 정상화를 돕기 위해 수입통관도 허용한다. 이 기간 중에는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유예된다.

□ FTA-AEO 등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

세계무역변화의 양대 축인 FTA AEO 제도의 본격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적응력 제고를 위해 전국 6개 본부세관 별로 FTA 집행센터에서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다국적 부품으로 구성된 완성품의



원산지 결정과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자동 관리하는 원산지관리 시스템(FTA-PASS)도 무상으로 지원된다.

특히, 중소기업이 FTA 특혜관세의 이해 및 준비 부족으로 특혜 전 고관세로 납부한 세금을 찾아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에 나선다. 이와 관련 하여 FTA 특혜관세는 수입신고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올 상반기중 AEO 인증 획득을 희망 신청하는 업체 중 관세청에서 심사 선정하는 약 60개 중소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전체 인증 컨설팅비용 중 최대 60%(약 1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국내 유망 중소기업들이 해외 수출 및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AEO 인증을 희망하는 약 200개의 중소수출 및 물류기업 관계자에게 AEO 제도, 인증기준, 가이드 라인 등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지원대책이 영세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완화 및 수출 경쟁력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동향 및 무역환경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여 시의 적절한 지원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 한다.

이에 발맞추어 신한관세법인은 기 발효된 각종 FTA 와 올해 발효될 한-EU FTA 와 한미 FTA 의 원산지 인증제도 및 AEO 제도의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박 중 일

jipark@customsservice.co.kr

FTA News

한-EU FTA.. 준비되었나요?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월 17일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도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지난 10월 25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7월 1일 FTA 발효를 위해 비준동의안의 빠른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한-EU FTA 혜택을 필수 준비사항을 미리 점검해보고자 한다.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월 17일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회의에서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됨으로써 EU 측의 한-EU FTA 7월 1일 잠정발효를 위한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우리나라도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지난 10월 25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7월 1일 FTA 발효를 위해 비준동의안의 빠른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EU 양측에서 7월 1일 FTA 발효를 앞두고 분주하게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수출입기업 스스로의 철저한 준비 없이는 FTA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한-EU FTA 활용을 위한 필수 준비사항을 미리 점검해보고자 한다.

“수출입업체 - HS CODE 확인하세요!”

HS CODE 6단위까지는 세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EU 양측의 HS CODE는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동일물품을 우리나라와 EU에서 다른 물품으로 보아 HS CODE 분류를 상이하게 한다면 서로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FTA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더구나 국가별로 HS CODE 6단위 이후의 분류체계가 달라 이에 따른 협정세율의 파악 및 적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8712에 자전거를 경기용과 화물운반용 등으로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지만, EU는 볼베어링 유무에 따라 자전거를 분류하고 있다.

수출입업체는 수출입물품에 대해 EU에서

적용하는 HS CODE를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FTA 활용의 첫 단추로 삼아야 한다.

“수출업체 - ‘가(假) 인증수출자제도’ 활용하세요!”

한-EU FTA에서는 수출건별로 6,000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관세당국이 인정한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FTA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필수임을 고려할 때,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은 EU 수출기업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다.

EU는 인증수출자제도를 1975년부터 시행한 반면 우리나라는 2010년 4월 1일부터 도입하였기 때문에 한-EU FTA 발효 후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업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2010년 8월 2일부터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수출자제도”를 마련함으로써 EU 수출기업이 관세청 또는 세관의 인증을 미리 득한 후 한-EU FTA 비준 이후에 인증심사를 생략하고, 인증서를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0년 11월 말 기준으로 EU에 수출하는 7664개 기업 중 208개 업체만이 가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EU 수출업체의 적극적인 가(假)인증수출자제도의 활용이 요구된다.⁽¹⁾

“수입업체 - EU 현지의 해외공급자가 인증수출자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EU로부터 322억 달러를 수입하였으며, 주요 품목별 한-EU FTA 연간 관세절감 효과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	LCD	기타 석유	자동차 부품	타이어
397	94	83	28	35

<단위 : 백만 달러, 2009년 기준>

수출업체의 경우에는 ‘가(假) 인증수출자제도’를 활용해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반면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해외 공급자의 인증수출자 지정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한-EU FTA 발효와 동시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출입업체 - 원산지검증 대응책을 마련하세요!”

한-EU FTA가 발효되면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원산지검증이란 FTA 관세혜택을 받은 물품에 대해 수입국 관세당국이 사후에 원산지기준의 충족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원산지기준 미충족 물품에 대해 부적절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관세의 추징은 물론 수입국 법령에 따른 벌금 등이 부과된다.

수출업체는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체계적으로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은 물론 관련 구비서류를 5년간 구비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원산지검증에 철저히 대비를 하여야 한다. 관세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EU 는 통상 수입건의 0.5%를 선별하여 원산지검증을 하며, 우리나라의 對 EU 건수 기준으로 연간 약 3,000 건의 원산지검증이 예상된다.⁽²⁾ 아울러 EU 는 검증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27 개국 모든 세관에 통지되기 때문에 향후 EU 수출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검증대비가 요구된다.

수입업체의 경우에도 부적절하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토대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경우 1 차적으로 면제된 관세의 추정위험이 있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한 경우 형식적 오류사항에 대해 꼼꼼히 검토함은 물론 계약단계부터 신뢰할 수 있는 해외공급자를

선별하고, 계약서상에 원산지증명서 오류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문화함으로써 추후의 검증으로 인한 추징에 대비하여야 한다.

“수출입업체 - 법률·지침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금년 7 월 1 일 한-EU FTA 비준에 맞춰 우리나라의 관련법령 18 개 개정이 예고되고 있다.⁽³⁾ 이 중에서도 수출입업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가인증서의 본인증서 전환시기” 및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시기”, “한-EU FTA 협정세율의 사후적용” 등은 국내 비준동의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FTA 관련법령의 부칙 또는 지침 등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수출입업체는 한-EU FTA 발효와 함께 안정적으로 FTA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FTA 활용을 위한 준비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행함으로써 한-EU FTA 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 대 구

dkchoi@customsservice.co.kr

⁽¹⁾ 조세일보 2010 년 11 월 29 일자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확대 시급” 참조

⁽²⁾ 2010 년 10 월 14 일자 관세청 보도자료 “한-EU FTA 정식서명, 우리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참조

⁽³⁾ 매일경제 2011 년 2 월 9 일자 “정부, 한-EU-한-미 FTA 조속 비준 촉구” 참조

Voices From The Fields

보세구역외 장치(타소장치) 허가제도 (관세법제 156 조)

원칙적으로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신고를 하고자 하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 장치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거대중량 등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두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못한 화물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보세구역 아닌 곳(타소)에 장치하는 것을 보세구역 외 장치(타소장치)라 한다.

보세제도란 수입신고를 받기 전에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외국물품을 반입, 장치, 검사, 가공, 건설, 전시, 판매, 운송하는 제도이다. 보세구역은 관세채권 확보와 통관절차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물품을 관리하는 지정보세 구역과 통관절차를 유예하고 전시, 판매, 제조, 가공을 허용함으로써 수출증진과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특허보세 구역이 있다.

원칙적으로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신고를 하고자 하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 장치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거대중량 등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두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못한 화물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고 보세구역 아닌 곳(타소)에 장치하는 것을 보세구역외 장치(타소장치)라 한다.

1. 보세구역외 장치 허가절차

크기·무게의 과다 또는 기타사유로 보세구역외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외 장치를 하려면, 장치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 선박명, 입항연월일, 선하증권번호 등을 기재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 신청서에 장치장소의 도면 및 약도,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보세구역외 장치 대상물품

세관의 입장에서 보면 물품을 보세구역외 장치할 경우 화물감시면에서 또는 물품검사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세구역외 장치를 허가함에 있어서는 대상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적인 기준은 세관장이 감시단속, 지역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있다.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 7 조)

① 물품의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로 보세구역외 고내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

“크기”에 대한 기준

→관세청「보세화물관리 개선대책시달(02.10.11)」

○ 1 개의 단위포장화물로서 길이(장척화물), 용적(부피화물)이 거대하여 보세창고내에 장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화물(예: 원목)

○ 다량의 산물(예: 옥수수 등 사료, 철광석 등)

“무게의 과다”에 대한 기준



→관세청「보세화물관리

개선대책시달(02.10.11)」

○ 1 개의 단위포장화물로서 무게가 과다(중량화물)하여 지게차 등 운반수단으로 보세창고내에 장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화물(예: 기계설비, 시설재 등 플랜트)

② 다량의 산물로서 보세구역외 장치 후 다시 운송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③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부패·변질하여 다른 물품을 오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과 방지·방습 등 특수 보관이 필요한 물품

④ 귀중품, 의약품, 살아있는 동·식물등으로서 보세구역외에 장치하는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⑤ 보세구역이 아닌 검역시행장에 반입할 검역물품

⑥ 보세구역외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양륙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외로 운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⑦ 「대외무역관리규정」제 2 조 제 11 호에서 규정한 중계무역물품으로서 보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시설미비, 장소협소 등의 사유로

보세구역내에서 보수작업이 곤란하고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⑧ 자가공장 및 시설(용광로 또는 전기로, 압연시설을 말한다)을 갖춘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고철등의 물품

⑨ 기타 세관장이 보세구역외장치를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기타의 사유”에 대한 기준

→관세청「보세화물관리

개선대책시달(02.10.11)」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제③호 내지 제⑧호의 사항에 준하며, 보세구역외 장치가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예:정밀기계류등 무진동 포장화물)

3. 담보제공

보세구역외 장치는 보세구역에 비하여 세관의 감시와 규제가 적게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외국물품이 세관의 지배 하에서 벗어나 관세징수의 확보가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보세구역외 장치를 허가할 때에는 관세확보를 위하여 수입통관시 실제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 제세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생략한다.

4. 보세구역외 장치 허가수수료

보세구역외 장치는 화주에게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하는 이로운 제도인 반면, 세관은

구분	담보제공생략 대상 내용
물품별	-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수출용원자재(다만, 농·축·수산물은 제외)
	- 무세물품(부가가치세 등 부과대상은 제외)
	- 방위산업용 물품
	- 정부용품
업체별	- 재수입물품 중 관세가 면제될 것이 확실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정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 관세등에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신용담보업체
	- 기타 관할구역내의 외국인투자업체, 제조업체로서 세관장이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체

화물관리, 수출입물품검사를 위하여 원거리까지 출장하여야 되기 때문에 인력소요가 많고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고 있다. 수수료의 금액은 허가건수 단위로 18,000 원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출입하거나 협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허가건수를 결정함에 있어 동일 모션으로 수입된 동일 화주의 화물이 동일 장소에 반입될 경우에는 1 건으로 본다. 세관장은 전산설비를 이용하여 보세구역 외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허가수수료를 일괄 고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5. 기타 준용규정

보세구역 외 장치물품의 보세구역과 관련된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물품의 반출입, 보수작업, 해체, 절단 등의 작업, 장치물품의 폐기, 견품반출, 세관공무원의 파견,
- 물품의 보관책임, 장치기간,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폐기 및 처리, 물품취급시간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윤 현 상

hsyoon@customsservice.co.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구제역이 지난해 12 월에 첫 유입된 이후 300 만 마리 이상의 소·돼지·염소·사슴 등 우제가 매몰됐고, 살처분 작업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돼지고기 및 분유 등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으로 국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 이번 할당관세 개정사항의 주를 이루고 있다.

국내 생필품의 가격안정을 통하여 서민 생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분유, 냉동고등어, 돼지고기 등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하였으며, 분유 등 품목은 현행 2%부터 40%까지의 관세율을 0%로, 오렌지주스 농축액은 현행 50%의 관세율을 35%로 각각 인하하여 2011 년 6 월 30 일까지 수입 신고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 및 인하세율

- 0203.29 기타 냉동한 돼지고기 [0% 6 만메트릭톤]
- 0303.74 냉동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 등) [0% 수입전량]
- 0304.29 기타 냉동 피레트의 명태 [0% 2 천메트릭톤]
- 0402.10 밀크와 크림 중 분상·입상 또는 그 밖의 고체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 분의 1.5 이하인 것 [0% 8 천메트릭톤]
- 0402.21 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0% 1 천메트릭톤]
- 0402.29 기타 [0% 1 천메트릭톤]
- 2009.11 냉동한 오렌지 주스 [35% 9 천메트릭톤]
- 0901.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아니한 볶지 않은



- 커피 [0% 수입전량]
- 0901.12 카페인을 제거한 볶지 않은 커피 [0% 수입전량]
- 3401.20 기타 형상의 비누 [0% 수입전량]
- 3823.70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4. 라우릴

알코올 [0% 수입전량]

□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덤핑방지관세는 「관세법」 제 51 조에 의하여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세목이다.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는 덤핑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물품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하였으며, 부과대상 물품, 기간, 부과율 및 부과대상자는 하기와 같다.

□ 부과대상 물품

말레이시아산 합판(HS CODE: 제 4412.31 호 또는 제 4412.32 호) 중 두께가 6 밀리미터(mm) 이상인 것

□ 부과대상 기간 및 부과율

2011년 2월 1일부터 3년간 / 5.12 퍼센트에서 38.10 퍼센트까지 덤핑방지관세 부과

□ 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 요약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고시는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관세평가제도 개선 등을 통한 사전심사제도 이용률 제고로 조세마찰의 최소화 및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지원하고자 함이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기타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을 반영하고 있다.

해당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은 하기와 같다.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사전심사(ACVA) 절차 등 제도개선

- 사전심사 보완요구에 대한 기한 연장범위 설정, 사전심사 신청내용 변경·철회시기 명확화,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자료의 구체적 명시, 사전심사 절차 보완 및 심사중단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 사전심사 승인의 보완, 사전심사승인 취소사유의 추가, 사전심사 신청기간 중에 유예되는 관세조사의 범위를 명확화 하고 있다.

□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인정사례 추가

발굴사항 규정

- 당해 물품의 가격이 기업의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 특수관계가 있는 우리나라 구매자에 대한 판매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 구매자에 대한 판매가격과 동일함이 증명되는 경우

□ 제도개선사항 반영 등 기타 불합리한 점 개선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세액의 차이를 즉시 징수 또는 환급하고 사후에 심사하도록 규정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심사 절차 개선하였으며, 사후귀속이익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경쟁처분 적법성 판단의 합리성을 위하여 관세청장 사전 검토 규정을 삭제하였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 지 아

(jachoi@customsservice.co.kr)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 미국 관세청 예규(Rulings)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EDITORIAL
NOTE

신한관세법인의 관세사들은 2주에 한번씩 모여 미국 관세청의 예규(Rulings)를 스터디하고 있다. 미국 Rulings는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도 자주 인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중요성과 연구의 실익이 크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사례를 연구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함께 공유할 만한 중요한 케이스를 선별하여 소식지에 게재해 나가고 있다. 이번 소식지는 Rulings 스터디의 조연자인 정정식 관세사께 조언을 받아 해당 Ruling 담당자의 글을 실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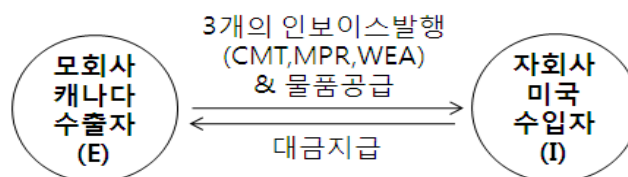
특정 금액의 실제지급가격 포함 여부

(HQ 547108 2000.03.28)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실제지급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이다. 거래가격은 당사자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거나 또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더라도 그러한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호에서는 실제지급가격의 범위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쟁점인 사례를 함께 알아보려 한다.

□ 거래사실(Facts)

1. 캐나다의 E(수출자)의 회사 I(수입자)는 E로부터 남성의류(이하 "제품")를 수입하여 미국 내 판매함.
2. I는 수입신고서 상의 수입자이며,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3. E는 I에 대하여 3가지 타입의 송장을 발행함. 미국에 물품이 수입될 때, I는 CMT와 MPR의 총 금액과 WEA의 일부가 포함된 금액을 신고 함. 3가지의 송장이란 다음과 같음.



가. CMT 송장: 자르기(Cut), 만들기(Make), 다듬기(Trim)

이 송장은 의류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생산비용을 나타냄. 이는 직, 간접적인 인건비임.

나. MPR 송장 : 재료 구입 비용(Material Purchase Recovery)

E 는 외국의 공급자로부터 원단을 구매함. 이 원단은 I 에게 판매되며 따라서 생산과정의 이전에 I 가 원단의 소유자가 됨. 이 송장은 I 에 대한 원단의 판매 금액임

다. WEA 송장: 보관 및 일반 비용의 배분 (Warehousing and Expense Allocation)

이 송장은 보관 및 일반적인 경영상의 비용임.

WEA 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포함됨.

- (1) 보관비(Warehousing)-생산에 사용될 원단의 보관 비용 및 생산 전 미국으로의 선적 대기 시 보관 비용
- (2) 경영자 인건비(Management Salaries)-몬트리올에 있는 E 의 관리자에 대한 봉급
- (3) 입력 직원 인건비(Data Entry Salaries)-몬트리올에서 발생하는 컴퓨터 비용과 관련된 자료 투입 비용
- (4) 사무직원 급여 및 사무용품비(Office Salaries and Supplies)-E 의 직원 고용 및 지원 비용
- (5) 컴퓨터 공급 비(Computer Supplies)-몬트리올에서의 컴퓨터와 그 공급 비용
- (6) 전화비(Telephone)-몬트리올에서 비즈니스를 위해 사용하는 전화비용
- (7) 구매 직원 급여(Buying Salaries)-E 의 직원들이 원단을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봉급
- (8) 트럭 대여비(Shipping Truck Rental)-제품을 I 창고로 운반하는데 드는 비용
- (9) 선적 소요 인건비(Shipping Salaries)-물품을 싣기 위한 선적, 포장 등 작업에 소요되는 보수
- (10) 판매 비(Selling Expenses)-소비자들의 주문 전화에 대한 수신자 부담 전화 비용
- (11) 기타 판매비(Traveling and Selling Expenses)-몬트리올에 있는 직원들이 고객을 방문하거나 다른 판매 활동을 하기 위한 이동 비용

6. I 는 CMT 와 MPR 이 수입물품의 가격을 나타낸다고 하며 WEA 송장은 물품의 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고, 따라서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쟁점(Issue)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할 때, WEA 중 어떠한 항목이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가?

□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1. 법적 근거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물품의 실제지급가격(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에 가산요소를 가산한 금액임. (미국 관세법 19 U.S.C 1401(a))

실제지급가격이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으로, 직간접여부를 불문하나, 운송, 보험, 선적에 수반되는 비용은 제외.

따라서 우선은 해당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임.

2. 관련 판례 및 예규

가. Generra Sportswear Co. 판례 (1990)

수입자가 수출자에 지급한 모든 비용들은

실제지급가격의 일부가 될 수 있음. "total payment"라는 용어는 포괄적인 의미이며 제품의 본래 가격에 더하여 다른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음.

그러나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지급한 모든 비용이 실제지급가격이라고는 단정 할 수 없음. 거래와 관련이 없는 비용에 대한 입증은 수입자가 하여야 함.

나. Moss Mfg 판례 (1990)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수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일일이 따진다면, 이는 엄청난 양의 일이 될 것이므로, 거래와 관련이 없는 비용에 대한 입증은 수입자가 하되, 일단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모든 비용들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다. Chrysler Corporation 판례 (1993)

- 국제무역법원(CT)는 거래와 독립적이거나 수입 제품과 관련 없는 비용은 실제지급가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시.

- 비용의 지급은 수입량 등에 따라 배분되어 이루어 질 수 있음. 이 사건에서는 수입되는 엔진(수입 물품)의 수량에 대하여, 소요된 기계 비용을 배분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판시. (예: 생산지원비용을 수입량에 대해 배분하는 경우)

라. HRL 544758 (1992. 02. 21)

수입자가 특수 관계가 아닌 수출자에게 창고료를 지불한 경우, 이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었음.

마. HRL 545663 (1995. 07. 14)

제품의 제조 전, 제조자와 특수 관계인 창고 소유자에게 지불한 창고료는 실제지급가격의 일부였음.

3. 쟁점 검토

- WEA 송장에 포함된 금액 중 트럭 대여비, 판매비, 기타 판매비(FACTS 3. 다 (8),(10),(11) 항목)는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은 쟁점 검토 되지 않음.

- 쟁점 사안에서 WEA 송장에 대해 I 가 E 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 송장 상의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이라고 가정할 수 있으나, 수입과 관련 없는 비용이라면 실제지급 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함.

- 보관비, 선적 소요 인건비, 경영자 급여, 입력 직원 급여, 사무직원 급여 및 사무용품비, 컴퓨터 공급비, 전화비, 구매 직원 급여는 수입물품과 관련 없음을 입증하기 어려움

(1) 선적 소요 인건비

선적 비용은 포장 비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포장 비용이란 어떤 물건이든 선적에 적합하도록 포장하거나 용기에 담는 비용임.

관세법 19 U.S.C 1401(a)에 따르면 포장비용이 이미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 가산 금액에 포함한다고 함.

관세청은 수입자가 금액의 배분에 대한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면 전체를 실제지급가격에 포함시켜야만 하나, 이 사안에서는 선적 보수의 50%를 선적 하는 데에 배분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이 만큼을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함.

(2) 보관비

보관비와 관련하여, 물품 생산 전 보관 비용은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봄

쟁점 사안에서 제조 전 원단의 보관과 선적 전 제품의 보관은 제품의 수입과 관련됨. 그리고 이 비용은 수입자에 의해 수출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총 창고 보관 비용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됨.

(3) 경영자 급여, 입력 직원 급여, 사무직원 급여 및 사무용품비 등

경영자 급여, 입력 직원 급여, 사무직원 급여 및 사무용품비용, 컴퓨터 공급비, 전화비, 구매직원 급여는 수입제품과 관련됨. I 측의 관리자 및 직원들에 의해 작성된 진술서에는 E 가 아닌 I 가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였음을 나타냄.

(가) 경영자 급여

5 명의 관리자는 몬트리올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회사의 전략기획을 맡았음. 이들은 이류의 새로운 디자인, 소비자 요구 충족, 원단 품질 향상, 고객에 적기 배송 등에 대하여 회의하였음. 이들의 봉급은 미국에서의 판매량에 기초하였음. 회계 관리를 하기도 하고, 캐나다에 2,500 명이 넘는 직원의 관리를 위해 예산 집행을 하기도 함

(나) 입력 직원 급여, 사무직원 급여 및 사무용품비 등 몬트리올에서의 컴퓨터 비용 및 컴퓨터 관련 자료 입력 인건비, E 회사 직원의 봉급과 각종 지원 비용, 컴퓨터 공급비, 전화비에 대하여 I 는 96%이상인 미국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이 비용들이 I 와 관련된다고 주장함.

그러나 이 역시 판매 지원 시설이므로 배분 비율을 따져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어야 마땅함.

(다) 구매직원 급여

I 는 원단의 구매 활동이 원단 가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함, 그러나 원단은 E 가 구매한 후 I 에 재판매되며, 이는 수입물품의 생산을 용이하기 위한 것임. 이 역시 배분 비율로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야 함.

- 배분 비율은 E 의 생산 관련 비용과 I 의 판매 관련 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어야 함.

쟁점 사안에서 E 가 인력, 시설, 투자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E 와 I 의 비용 부담을 9.2 : 1 로 결정함. 즉, 92.2%의 경영자 급여, 입력 직원 급여, 사무직원 급여 및 사무용품, 컴퓨터 공급비, 전화비와 구매 직원 급여는 수입되는 옷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임.

- 본래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에서는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없으나, 단지 특수 관계가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활용 가능함.

- 본 사안의 경우 CMT, MPR, WEA 이 세가지 송장 금액이 모두 감안된 가격은, 이익 금액에 기타 모든 비용을 고려한 것이므로, 마치 특수관계자가 아닌 것처럼 거래하였음.

일반적인 상거래 상 가격 결정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음.

□ 결정(Holding)

1. 제시된 증거들을 토대로, 특수관계자인 두 당사자간의 거래가격은 3 개의 송장(CMT 전체 금액, MPR 전체 금액 및 WEA 금액 중 일부)에 의해 나타낼 수 있음.

2. E 와 I 의 특수관계가 거래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가격을 기초로 평가가 가능함.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신 성 훈

shshin@customsservice.co.kr

(※예규 원문은 아래 링크 - 공지사항 참고)

<http://www.customsservice.co.kr>

WHERE IS GRACE CHANG?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용기를...



장승희
대표 관세사

깊고 길던 겨울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겹으로 두르고 있던 두툼한 머플러를 풀어냅니다. 추위가 갔다고 당장 꽃피는 봄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따뜻한 봄을 기대해 봅니다.

먼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에서도 두터운 얼음장 밑으로 희망의 물결이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는 오랫동안 완강하게 단혀 있던 리비아, 튀니지 등의 나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검은 대륙에 큰 희생 없이 밝은 봄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도 봄이 왔습니다. 중소기업에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정부의 각 부처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동반성장지수 추진계획'을 세우고 대기업들의 평가지표를 측정하여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을 향하는 선봉에 선 대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도전하기 위하여 곁에서 묵묵히 지원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번 cover story 는 관세청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책인 CARE PLAN 2011 에 관한 것입니다. 관세의 부과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 단속 업무를 관장하기에 가까이 하기엔 좀 걸그룹처럼 느껴지는 관세청이 중소기업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 도입한 정책입니다. **납기연장, 분할납부, 수출환급대상확대, 체납자신용회복지원, FTA/AEO 제도 지원** 등의 시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 월 17 일 유럽의회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채택되었고, 7 월 1 일의 발효를 위해 한국국회에서도 비준 동의안이 조만간 처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EU FTA 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준비하여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산지인증 수출자제도,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원산지검증제도** 등 FTA News 다시 살펴 보시고 준비사항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Voices From the Fields 에서는 보세구역 외 장치(타소장치) 허가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수입물품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크기 또는 무게 과다 등의 사유 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타소)에 장치를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시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역발생으로 국내축산물의 국내생산이 감소하여 돼지고기 등의 수입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세무역관련 법령소식란에는 생필품가격안정을 통하여 서민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가적으로 저율의 할당관세를 확대적용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판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등 일부 법령이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세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신한의 사내에서 연구하고 있는 미국관세청예규(US Customs Valuation Rulings) 중 하나의 사례는 '실제지급가격의 범위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살펴보시고 수입신고가격의 적법성 관리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언 땅을 뚫고 새싹이 나오기 위하여는 단단한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합니다.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어 한 뿌리 한 뿌리 단단하게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새 봄에 새싹을 틔우시는 고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Seunghee Chang*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이메일(shinhan@customsservice.co.kr)이나 전화(02-542-1181)로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zoom-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ABOUT WRITERS

COVER STORY - CARE PLAN 2011



박 종 일 관세사
(jiipark@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통관 3 부
- 통관 3 부 팀장
- (주) 피델릭스 기업상담사

FTA News- 한-EU FTA 준비되었나요?



최 대 규 관세사
(dkchoi@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 미국공인회계사(AICPA)
- 원산지관리사 수석합격

Voices From The Fields- 수출기업을 위한 전략물자제도



윤 현 상 관세사
(hsyoo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청주지사 지사장
- 청주세관, 충주세관
- 이의신청 심의위원
- 청주세관 감액경영협의회 위원
- 한국관세사회 충북지부 운영위원

관세 법령 변경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등



최 지 아 관세사
(jachoi@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연
- FTA 통관 실무 및 비즈니스 모델

US Rulings 연재@ 특정금액의 실제지급가격 포함여부



신 성 훈 관세사
(shshi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AEO Team 팀장
- 한국관세사회 AEO 인증 가이드북 발간 참여
- 웅진패스원 강사 관세평가